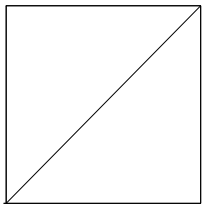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2024 - 7호
보 고 연 월 일	2024. 3. 25. (제130차 정기회의)

보고안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목 차

Ⅰ.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1

Ⅱ. 양형위원 개임, 임명장 수여식 개최 ····· 2

1. 개요 ····· 2
2. 신규 임명 대상자 ····· 2
3. 임명장 수여식 개최 ····· 2
4. 양형위원 구성 ····· 2

Ⅲ.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 4

1. 개요 ····· 4
2. 신규 위촉 대상자 ····· 4
3. 위촉장 수여식 개최 ····· 4
4. 전문위원 구성 ····· 5

Ⅳ. 제14차 자문위원 대법원장 접견 및 자문회의 개최 ····· 6

1. 대법원장 접견 ····· 6
2. 자문회의 ····· 6
3. 회의 의견 요지 ····· 6

Ⅴ.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 결과 보고 ····· 11

1. 공청회 개요 ····· 11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11
3.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 12
4. 공청회 온라인 방청객 의견 요지 ····· 20

Ⅵ.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21

1. 개요 ····· 21
2. 각 의견조회 결과 ····· 22

Ⅶ.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23

1. 개요 ····· 23
2. 관련 규정 ····· 23
3. 공개 방법 ····· 24
4. 추진 일정 ····· 24

Ⅷ.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25

1. 온라인 청원(청원24) ····· 25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26
3. ‘국민신문고 게시판’ 접수의견 보고 ····· 28
4. 민원 우편 접수의견 보고 ····· 34

□ [별지1]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 37
□ [별지2]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 39
□ [별지3] 청원서 2부 ····· 41

Ⅰ.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60차	2024. 3. 11. 15:00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제시된 공청회 의견, 관계기관 의견, 자문위원 의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

Ⅱ. 양형위원 개임, 임명장 수여식 개최

1. 개요

○ 2024. 2. 13.자로 신숙희 상임위원 겸임 해제

○ 2024. 2. 19.자로 유영근 위원 해임 간주(퇴직)

2. 신규 임명 대상자

○ 2024. 2. 13.자로 최 환 상임위원

○ 2024. 3. 25.자로 정상규 양형위원 임명

3. 임명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24. 3. 25.(월) 14:40

○ 장　　소 : 대법원 11층 대접견실

○ 참석　범위 : 대법원장, 위원장, 비서실장

○ 위촉대상자 : 최 환 상임위원, 정상규 신임 양형위원

4. 양형위원 구성

[2024. 3. 25. 기준]

지위	성명	직위	위촉일자 (임명일자)
위원장	**이 상 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 4. 27.
위원 (법관)	**윤　　준**	서울고등법원장	2023. 4. 27.
	윤 승 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3. 4. 27.
	최　　환 **(상임위원)**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2024. 2. 13.
	정 상 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4. 3. 25.
위원 (검사)	**이 주 형**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23. 4. 27.
	정 유 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2023. 9. 18.
위원 (변호사)	**이 재 헌**	변호사	2023. 4. 27.

	채 근 직	변호사	2023. 4. 27.
위원 (교수)	**강 수 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 4. 27.
	김 혜 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23. 4. 27.
위원 (학식·경험)	**박 장 호**	MBC 보도본부장	2024. 1. 8.
	백 범 석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2023. 4. 27.

※ 신임 양형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1]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Ⅲ.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개요

○ 2024. 2. 16.자로 김한울 전문위원 임기만료

○ 2024. 3. 1.자로 최형준 전문위원 임기만료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2. 신규 위촉 대상자

○ 이성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24. 2. 19.자)

○ 이혜랑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2024. 3. 2.자)

3.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24. 3. 25.(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이성화, 이혜랑 신임 전문위원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2]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4. 전문위원 구성

[2024. 3. 25. 기준]

구분	성 명	소 속	직위	최초 위촉일
법원	김 세 종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23. 3. 28.
	김 용 민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2023. 2. 22.
	이 혜 랑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판사	2024. 3. 2.
검찰	정 현 주	대검찰청 양형정책관	부장검사	2023. 10. 13.
	이 성 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2024. 2. 19.
변호사/ 군법무관	김 현 아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2023. 3. 7.
	최 익 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2021. 8. 17.
교수/ 전문가	한 상 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5. 16.
	최 호 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2023. 4. 12.
	최 준 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 8. 20.
	윤 지 영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본부장	2023. 9. 9.
	홍 진 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7. 5.
	박 복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 본부장	2021. 7. 5.

Ⅳ. 제14차 자문위원 대법원장 접견 및 자문회의 개최

1. 대법원장 접견

○ 일시 : 2024. 2. 5. (월) 13:30~13:50

○ 장소 : 대법원 11층 대접견실

○ 참석 : 양형위원회 위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비서실장, 상임위원, 사법지원실장, 자문위원(12명), 운영지원단장

2. 자문회의

○ 일시 : 2024. 2. 5. (월) 14:00~16:00

○ 장소 : 대법원 1605호 무궁화홀

○ 참석 : 양형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자문위원, 운영지원단장

○ 안건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각 양형기준안에 대한 자문의견

3. 회의 의견 요지

1) 제1안건: 양형기준의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문구에 대한 제언

▣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탁한 것만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므로 이번 의결 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
- 공탁이 곧 감형이라는 인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찬성하고 다른 범죄군도 전체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실질적 피해 회복에서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상 피해의 경우 2/3 이상)라는 상한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상당한 피해 회복의 경우 하한의 가이

드라인을 러프하게라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을 감경인자로 고려하면 안 된다는 의견
- 처벌불원이라는 것이 판단의 요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원의 판단을 대체하는 요인은 될 수 없어야 한다는 의견
- 피해자가 아닌 유족은 보상이나 합의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의견
- 처벌불원의 정의규정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 입장에 대한 국제적 규정에 맞지 않다는 의견. 즉, 처벌불원 의사를 장애인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의견

2) 제2안건: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의 양형인자

▣ 대유형 2-나(미성년자에 대한 매매, 수수 등)에서 일반가중인자로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위 인자를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위 인자를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마약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양형기준만 수정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혹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양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지휘·감독관계나 위계적인 관계는 기존 양형기준안의 가중요소에 어느 정도 포함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인적 신뢰관계 이용'까지 추가할 것인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 미성년자 마약범죄 예방 필요성은 있겠으나 미성년자도 자신의 의사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을 가중하는 특별한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의견

-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위 가중인자를 추가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의규정을 만들 때는 성범죄 양형기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차용하지 말고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특수성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정의규정에 포함하면 좋겠다는 의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친족관계, 부모자식 관계, 성인과 미성년자 데이트관계라는 의견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의 범죄는 더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 '상당한 피해 회복'에서의 '상당한'은 '고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학계나 일반인들의 오인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 '실질적 피해 회복'의 '실질적'은 의미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3) 제3안건: 양형기준안 권고 형량범위의 적절성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범위 적절성

- 스토킹범죄에 관해서는 처벌불원이 감경요소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 법정형의 한계가 있지만,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 이에 비하면 양형이 가볍다고 생각된다는 의견
- 마약범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치료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
- 마약범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의 정의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에 '더 높은' 또는 '동등한' 정도의 표현을 넣는 것이, 본인이 범한 마약범죄가 가장 높은

유형에 있는 범죄자의 수사협조 유인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4) 기타 안건

- 안건에 언급되지 않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자유로운 말씀
- 양형위원회 또는 양형기준이 향후 나아가야할 바와 과제에 관한 자유로운 말씀
  - 양형에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표현하고 바꾸어 가면 좋겠다는 의견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와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의 경우 양쪽에 들어가면서 중간영역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므로, 감경인자만 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영문으로도 양형기준을 볼 수 있게 하는 점 등은 국제적으로도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되고 양형위원회의 존재만으로도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 스토킹범죄의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에서 요구하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오히려 2차 피해 야기 등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진지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공탁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
  - 스토킹범죄의 행위유형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형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고 향후 양형인자와 관련해서도 경미한 사건부터 심각한 사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별화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
  - 스토킹범죄에서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양형인자에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성범죄 양형기준과 같이 2-2군으로 분류하여 처벌불원만 특별양형인자로 하자는 의견
  - 스토킹처벌법은 여성폭력의 일환으로서의 스토킹을 규율하고자 시작된

것인데 지금은 층간소음, 채권 추심 등으로 스토킹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특성 자체가 무화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양형인자에서 스토킹범죄의 본래 특성(여성폭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설정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Ⅴ.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 결과 보고

1. 공청회 개요

○ 일시 : 2024. 2. 16. (금) 14:00~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방청 : 현장 방청 및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 진행 내용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내지 설정안 발표, 지정토론 및 답변, 방청객 질의·답변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사회자 : 최 환 상임위원

○ 발표자 : 김세종 수석전문위원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지정 토론자

- 최승재(변호사·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 최성준(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장)
- 김웅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지정 토론자

- 이승준(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운희(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김재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감)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지정 토론자

- 이재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독성학과장)
- 천영훈(인천참사랑병원 병원장)
- 김윤주(서울고등법원 국선전담변호사)

3.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1)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유형 분류]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은 기존의 양형기준에 없던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를 별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는데, 영업비밀은 '기업의 사익'에 해당하나 산업기술은 정부가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를 해야 한다고 인정하여 개별법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로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서 '국가적 이익'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의견(최성준 과장)이 있었음

[권고 형량범위]

○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기초로 관련 특별법의 형량을 고려해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보다 형량을 더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비밀 침해행위'보다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의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는 방향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최성준 과장)이 있었음

○ 반면, ①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범위를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② 법정형과 행위태양이 거의 동일하고 범행의 객체에 차이가 있을 뿐인 산업기술 침해범죄와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달리하여 산업기술 침해범죄의 형량을 규범적으로 더 상향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김웅재 교수)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는 다른 지식재산권범죄와는 달리 기술침해범죄는 개

인적 법익을 넘어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점 등에서 양형기준의 규범적 상향이 필요하며, 이것이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하고, 비록 영업비밀 침해범죄와 산업기술 침해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 및 각종 특별법 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술침해범죄는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적 성격이 강하므로 양자 사이의 불법성에는 차이가 있다는 답변(최호진 전문위원)이 있었음

○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4-4유형)의 기본영역 상한과 가중영역 상한을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최성준 과장)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는 형량범위는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설정하되,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하여 정하고 있는데,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유형은 양형사례가 없어 법정형이 동일·유사하고 구성요건이 유사한 양형기준을 참고하되 그보다 높게 설정되었고, 향후 양형사례가 축적되는 추이를 지켜본 후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이 있었음

[양형인자]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자수 관련 특별감경인자를 등록권리와 비등록권리를 구별하여, 등록권리의 경우에는 내부고발이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자수'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영업비밀 등 비등록권리는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

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로 설정하자는 의견(최승재 변호사)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등록권리 침해행위,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우에도 예컨대 범행 고의 등을 부인할 때 범죄 가담자의 협조가 있는 경우 범죄 입증이 용이할 수 있고, 외국에서 생산된 위조품 등을 수입·운반·판매하는 조직적인 범행 등에서 실익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의 범죄군에서 동일한 양형인자를 대유형별로 각기 다르게 설정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 점들을 고려하면 등록권리 침해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유형에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자수 관련 양형인자를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 특허권 등 등록권리 침해범죄에서 권리의 범위나 유·무효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침해범죄의 경우에도 침해대상 비밀 내지 기술의 범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심급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감경인자 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김웅재 교수)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의 경우 행위불법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다른 범죄군에서도 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토론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음(최호진 전문위원)

(2)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관한 의견

[설정 범위]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대해서도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승준 교수)에 대하여, 전자장치 효용 침해 범죄의 경우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2024. 1. 12.부터 벌칙 조항이 시행되어 양형 실무례가 없어 형량범위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이번에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추후 양형실무례가 충분히 축적되면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김용민 전문위원)이 있었음

[권고 형량범위]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1-2유형)의 형량범위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승준 교수)에 대하여,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의 경우 양형통계를 기초로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의 형량범위를 참고하되,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수성 내지 위험성, 그리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고려하여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다소 상향하여 설정하였다는 답변(김용민 전문위원)이 있었음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을 동일한 법정형의 타 범죄보다 높게 처벌해야 또 다른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김재영 경감)에 대하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의 위험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양형위원회는 양형실무, 스토킹처벌법 내 타 범죄와의

정합성,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 많은 사항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등 위반의 양형기준안을 정하였고, 특히 범행 초기 행위를 엄벌함으로써 계속될 수 있는 범행을 단절시킬 필요가 있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감경구간에도 징역형을 제시하였다는 답변(김현아 전문위원)이 있었음

[형종 선택의 기준]

○ 일반 스토킹범죄(1-1유형) 가중영역에서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벌금형 선택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한 합의 시도에 따른 피해 발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벌금형의 가능 여부를 오로지 피해자의 의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스토킹범죄 가중영역에도 애초부터 벌금형을 규정하여 벌금형 선택 여부를 법관의 재량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최운희 변호사)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양형요소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고, 피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다가 또다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하나, 그러한 우려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중영역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답변(정현주 전문위원)이 있었음

○ 잠정조치 위반(2-2유형)의 가중영역에서 잠정조치 위반은 법원의 공권적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사회적 법익 침해의 성격이 강한데 '처벌불원'을 벌금형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의견(최운희 변호사)에 대하여, 잠정조치 위반은

법원의 조치를 위반한 것이나, 피해자의 안전 등 개인적 법익도 잠정조치 위반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익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답변(정현주 전문위원)이 있었음

[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관련하여, '비교적 단기간이라도 집요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도 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김재영 경감)에 대하여, 스토킹 기간이 짧지만 심각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김현아 전문위원)

○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피해자가 자상이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켜야 하고, 그 객체도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이외에 친구, 직장동료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승준 교수)에 대하여, 위 양형인자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상이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피해자의 친구나 직장동료의 경우도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양형인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답변(김용민 전문위원)이 있었음

○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피해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양형인자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

자는 의견(김재영 경감)에 대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등 다른 범죄군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토론자의 의견처럼 스토킹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밀접한 관계’ 등에서의 특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김현아 전문위원)이 있었음

[집행유예 기준]

○ 통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이를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김재영 경감)에 대하여, 위 의견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일반참작사유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 전체의 정합성 및 통일성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해보겠다는 답변(김현아 전문위원)이 있었음

(3)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유형(2-나) 신설 관련]

○ 과거와 달리 최근의 마약 거래는 상당 부분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 판매자가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여부를 알고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설 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김윤주 변호사)에 대하여,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고, 10대 청소년들도 SNS, 해외직구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을 고려하면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고, 개별 사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마약 판매자가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고 거래하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관련 증거들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이 입증된다면 신설된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유형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대마수출입 유형 재분류 관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마수출입 등 범죄에 대해 추가적인 가벌성과 위험성을 지적한 것은 아닌 점, 대마의 수입으로 인정되는 행위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고, 대마의 위험성과 중독성이 비교적 낮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김윤주 변호사)에 대하여, 대마의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대마수출입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3-3유형으로 재분류한 것은 적절하고,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은 양형인자를 통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마약 치료 및 사회복귀 관련]

○ ① 처벌과 함께 치료와 사회복귀 활동기간이 양형기준에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재신 과장), ② 마약범죄 적발 시점으로부터 선고 시점까지 적극적인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단약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이를

감경인자로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하고, 수용 기간 동안 교정 시설 내에서 마약류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한 치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천영훈 원장)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는 ①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하여야 하므로(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제2호), 위와 같은 사정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다는 답변(최형준 전문위원), ② 마약류 중독사범에 대해서는 단순한 처벌이나 격리가 아닌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자수'나 '중요한 수사협조'가 특별감경인자로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답변(윤지영 전문위원)이 있었음

4. 공청회 온라인 방청객 의견 요지

○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에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이라는 특별가중인자가 대부분 적용될 것 같고, 반면 "중요한 수사협조"라는 특별감경인자는 대부분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음

○ 특별가중인자로서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과 특별감경인자로서 중요한 수사협조는 기존부터 규정되어 있던 양형인자로, 이번에 새로 신설된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에서도 그대로 반영하였고 특히 질문자가 상정한 사안과 같이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더욱 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답변(김한울 전문위원)이 있었음

Ⅵ.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제2항,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대상 기준안

- 양형위원회 제129-1차 회의(2024. 1. 18.)에서 의결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2) 조회 기간

- 2024. 1. 22. ~ 2024. 2. 22.

(3) 회신 기관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8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8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대한법무사협회, 법무부, 한국여성변호사회, 특허청, 반도체협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변호사협회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 41개(국회 4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9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대한법무사협회, 법무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가족부, 한국피해자학회, 한국여성의 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 대한변호사협회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8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6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대한법무사협회, 법무부, 한국여성변호사회,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4) 회신 자료

- 별첨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와 같음

2. 각 의견조회 결과

(1)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별첨1.과 같음

(2)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별첨2.와 같음

(3)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별첨3.과 같음

Ⅶ.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24. 3. 25.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24. 4. 초순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23. 4. 중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Ⅷ.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온라인 청원(청원24)

[양형위원회 형량(양형)기준 개편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서 제출]

(1) 주요 내용

연번	접수일자 (접수건수)	민원 요지
1	2023. 11. 5.(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에 관한 죄'의 각 조항에 정한 죄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포함)'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
2	2023. 11. 18.(1)	○형법 제2편(각칙)에 정한 각 장의 범죄에 대하여 설정된 각 양형기준별로 범죄가중 유형의 대표적인 사항인 '과실, 고의, 미수, 착오, 중과실, 음주나 마약흡입으로 인한 범행유발에 대한 과실, 고의 판단, 피해 회복(공탁 등), 반성 여부 등'의 포함 여부가 제각각이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포함하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

○ 공개청원 처리 절차: 청원심의회 개최 요청(처리부서) → 청원심의회 개최 통보(주관부서) → 청원심의회 의결 → 처리결과 통보(주관부서) → 청원공개결정 및 통지(처리부서) →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한 국민의견수렴 절차(30일, 처리부서) → 제출된 의견 취합 후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 → 청원처리결과 통지(90일 내, 처리부서)

(2) 처리 결과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먼저, 양형기준에 관하여 귀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형위원회는 2021. 12. 6. 범죄군 전반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

인자를 정비하면서 양형인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였고, 합의 관련 양형인자로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범죄군별로 규정하였습니다.

- 다만, 형법 제8장 ‘공무집행에 관한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피해 회복에 관한 양형인자를 재검토하여 달라는 취지의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먼저, 양형기준에 관하여 귀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3) 첨부

○ 청원서 2부(김○문)[별지3]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2)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4. 03. 08. 까지 총 9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3. 12. 24. ~2024. 02. 16.(5)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 민원
2	2024. 01. 22.(3)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3	2024. 01. 27.(1)	○모바일을 통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보기 오류 수정 요청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반복 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모바일을 통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보기 오류에 대하여는 수정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3. ‘국민신문고 게시판’ 접수의견 보고

(1)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4. 03. 08. 까지 총 23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 (접수건수)	민원 요지
1	2023. 12. 26.(1)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요청
2	2023. 12. 29.(1)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관련 의견
3	2024. 01. 08.(1)	○개별사건에 대한 의견 및 양형기준
4	2024. 01. 15.(1)	○개별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 및 10대들의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처벌)강화 요청
5	2024. 01. 16.(1)	○음주운전 관련 처벌 및 양형기준 강화 요청
6	2024. 01. 19.(1)	○합의에 의한 감형 반대
7	2024. 01. 19.(1)	○판결 형량 강화 요청
8	2024. 01. 19.(1)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9	2024. 01. 22.(1)	○형량 강화 요청
10	2024. 01. 24.(1)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11	2024. 01. 25.(1)	○개별 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 및 살인범죄 양형강화 요청
12	2024. 01. 25.(1)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요청
13	2024. 01. 25.(1)	○양형기준 강화 요청
14	2024. 01. 25.(1)	○아동 학대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15	2024. 01. 26.(1)	○사기, 횡령, 배임,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16	2024. 01. 29.(1)	○음주로 인한 감형에 대한 의견
17	2024. 02. 01.(1)	○피싱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18	2024. 02. 11.(1)	○ 주가조작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19	2024. 02. 13.(1)	○사기범죄 처벌 강화 요청
20	2024. 02. 19.(1)	○처벌 강화 요청
21	2024. 03. 06.(1)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청
22	2024. 03. 06.(1)	○소년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23	2024. 03. 07.(1)	○양형 강화 요청

○ 1번, 5번, 6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 17번, 18번, 2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존 제작 체험 대상 범죄 외에 체험 대상 범죄를 다양화 하는 등의 매년 추가 콘텐츠 제작을 진행,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향후 콘텐츠

제작 및 그 운영에 있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의 형사처리방안에 관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등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사건의 판결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0대들의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처벌)강화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의 판결 결과나 선고 형량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살인범죄 양형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기준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형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여광장 자주 묻는 질문 제목 '양형기준에 의하면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감경되나요?' 부분에 상세한 답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양형기준에서는 '심신미약'을 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양형기준에서는 '심신미약' 감경인자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서술식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OO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즉,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일률적으로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9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의 판결 결과나 선고 형량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2024년 중반 이후부터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귀하의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0번, 2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처벌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형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4. 민원 우편 접수의견 보고

(1)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4. 03. 08.까지 총 1건)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4. 03. 06.(1)	○ 심신미약에 대한 문의 및 유사 판례 요청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개별 사건의 양형인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양형심리를 통해 결정할 재판사항에 해

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심신미약과 관련하여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여광장 자주 묻는 질문 제목 '양형기준에 의하면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감경되나요?' 부분에 상세한 답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양형기준에서는 '심신미약'을 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양형기준에서는 '심신미약' 감경인자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서술식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OO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즉,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일률적으로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양형위원회에서는 개별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은 회신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별지1]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성 명	최 환(崔 煥)
	생년월일	1970. 08. 01
	소 속	양형위원회
	직 위	상임위원

학 력	
○ 1989.	울산고등학교 졸업
○ 199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주 요 경 력	
○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8.	사법연수원 수료(제27기)
○ 1998.	군법무관
○ 2001.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4.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 2007.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10. 2.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겸임)
○ 2011. 2.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13. 2.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 2.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8. 2.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 2.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 2024. 2.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table>
<tr><td rowspan="4"> </td><td>성 명</td><td>정 상 규(丁 相 奎)</td></tr>
<tr><td>생년월일</td><td>1969. 02. 13</td></tr>
<tr><td>소 속</td><td>서울서부지방법원</td></tr>
<tr><td>직 위</td><td>지방법원 부장판사</td></tr>
<tr><td colspan="3">학 력</td></tr>
<tr><td colspan="3">○ 1987. 광주고등학교 졸업
○ 199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졸업
○ 1995.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td></tr>
<tr><td colspan="3">주 요 경 력</td></tr>
<tr><td colspan="3">○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0.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2. 서울가정법원 판사
○ 2004.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 2007.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1. 2.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 2013. 2.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5. 2.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2016. 8.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9. 2.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1. 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22. 2.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4. 2. [現]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td></tr>
</table>

[별지2]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table>
<tr><td rowspan="4"> </td><td>성 명</td><td>이 성 화(李 性 樺)</td></tr>
<tr><td>생년월일</td><td>1985. 9. 16.</td></tr>
<tr><td>소속</td><td>대검찰청</td></tr>
<tr><td>직위</td><td>검찰연구관(검사)</td></tr>
<tr><td colspan="3">학 력</td></tr>
<tr><td colspan="3">○ 2004. 광주 설월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td></tr>
<tr><td colspan="3">주 요 경 력</td></tr>
<tr><td colspan="3">○ 2010.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사법연수원 수료(제42기)
○ 2013.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2015. 2.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
○ 2018. 2.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2020. 2.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2022.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 2024. 2. [現]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검사)</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 </td><td>성 명</td><td>이 혜 랑 (李 蕙 娘)</td></tr>
<tr><td>생년월일</td><td>1985. 1. 7.</td></tr>
<tr><td>소속</td><td>서울중앙지방법원</td></tr>
<tr><td>직위</td><td>판사(형사지원심의관 겸임)</td></tr>
<tr><td colspan="3">학 력</td></tr>
<tr><td colspan="3">○ 2003.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9.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td></tr>
<tr><td colspan="3">주 요 경 력</td></tr>
<tr><td colspan="3">○ 2008.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2011. 사법연수원 수료(제40기)
○ 2011.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2013.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5. 2.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20. 2.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24. 2.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24. 2. [現]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겸임</td></tr>
</table>

[별지3] 청원서 2부(김O문)

기본 정보

접수번호	20231105-9740000-0001	**청원구분**	일반청원
접수일시	2023-11-05 14:16	**처리기간**	2023-11-05~2024-02-05
청원서 접수기관	대법원	**청원 공개 여부**	공개
청원 결과 수신 방법	■국민비서 ■문자 ■이메일 □우편	**진행 상황 수신 방법**	□국민비서 ■문자 ■이메일
담당자 성명		**접수 방법**	온라인

청원 정보

청원사항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청원제목	「형법」 제8장, 제10장 죄형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개정 청원

청원 내용

청원취지

「형법」 제8장 '공무에 관한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에 관한 죄'의 각조에 정한 죄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포함)'을 삭제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법」 제8장 '공무에 관한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에 관한 죄'의 각조에 정한 죄형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제8장과 제10장의 조문의 장은 '공무' 또는 '공무수행의 공정성,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러한 죄형들입니다.

즉 제8장 '공무에 관한 죄'는 각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모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 '공용서류등의무효, 공용물의파괴',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무효', 제143조 '미수범', 제144 조 '특수공무방해'를 정하고 있어서 모두 다 공무 또는 공무집행을 위한 공무원, 국회의 권능, 검사의 권능, 공무의 비밀, 강제집행의 실효성, 공용서류의 중요성을 각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무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고, 공무에 관한 죄가 실행되어 기수가 된 이상 그 회복을 위한 공탁 등의 금전적인 배상 등이 그 중요성을 상쇄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의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제153조 '자백, 자수', 제154조 '허위의감정, 통역, 번역', 제155조 '증거인멸등과친족간의특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제10장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하여 그 공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들입니다.

이러하다면 결과적으로 제8장과 제10장의 각 죄형에 대해서는 그 공정성과 공무의 안정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장의 민사적인 부분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고 할 것이기에 이들 각 장의 조에 정한 죄형에 대해서 그 양형을 정한 기준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을 삭제하도록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기본 정보

접수번호	20231118-9740000-0003	**청원구분**	일반청원
접수일시	2023-11-18 13:04	**처리기간**	2023-11-18~2024-02-16
청원서 접수기관	대법원	**청원 공개 여부**	공개
청원 결과 수신 방법	■국민비서 ■ 문자 ■ 이메일 □우편	**진행 상황 수신 방법**	□국민비서 ■ 문자 ■ 이메일
담당자 성명	이아송	**접수 방법**	온라인

청원 정보

청원사항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청원제목	대법원 양형위원회 현행 양형기준(44개) 개정 청원

청원 내용

청원취지

「형법」 제2편(각칙)에 정한 각 장의 죄형에 대하여 제정된 각 양형기준에 대해서 범죄가중유형의 대표적인 사항들을 통일적으로 포함하도록 양형기준의 일제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법」 제2편(각칙)에 정한 각 장의 죄형에 대하여 제정된 각 양형기준에 대해서 범죄가중유형의 대표적인 사항들을 통일적으로 포함하도록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양형기준은 국민참여재판이나 법관의 양형에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고,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의견과 다른 판단을 하는 법관은 상세한 사유를 판결문에 부기하도록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는 제1항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2항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형기준 중 대표적인 사항 들의 포함여부가 제각각 이라고 보입니다.

즉 과실, 고의, 미수, 착오(이미 죽은 사람에게 산 사람으로 알고 자상을 입힌 경우 등, 반대로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유기한 경우), 공과실(공무원, 업무과정중 범행을 한 의사, 변호사, 검사, 변리사, 간호사 등), 음주나 마약흡입으로

인한 법행유발에 대한 과실,고의 판단, 피해회복(공탁 등), 반성여부 등에 대해서 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업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생기는 범죄,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지만 공무원의 신분이 작용한(위력)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형인자를 고려하도록 기존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전부재검토를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미비된 양형기준을 일제정비하여 시행되도록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조직법[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12.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6조(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제47조(평의 등의 비밀) 배심원은 평의·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